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

3. 주요내용

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‘문화가 있는 날’로 지정·운영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‘문화가 있는 날’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,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

‘문화가 있는 날’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,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
(안 제8조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 등 협의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매달 마지막”을 “매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문화의 날 행사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12조제2항에 따라 <u>매달</u> <u>마지막</u>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 정 · 운영할 수 있다. ④ · ⑤ (생 략)	제8조(문화의 날 행사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매주</u> ----- ----- -----.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605